

# 〈교류분석상담연구〉 학술지 운영 규정

## 제 1장. 학회지 발간 규정

**제1조 [학술지 명칭]**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(이하 ‘본 학회’ 라 한다.)의 학술지는 ‘교류 분석상담연구’ 로 정한다.

**제2조 [발간시기]** 연간 2회(6월 30일, 12월 30일)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조 [지면구성]** 연구논문(기획연구, 자유공모연구)으로 구성한다.

## 제 2장. 투고 규정

**제4조 [투고자격]** 학술지의 투고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1. 학회에서 요청하는 투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제출을 거부를 하는 경우
2.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조(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)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
**제5조 [투고시기]** 투고의 시기는 연중 상시 투고를 원칙으로 하며, 일정 기간을 공지 하여 집중할 수 있다.

**제6조 [투고신청]** 다음 각 호의 서류는 본 학회 홈페이지(<http://www.taca.kr>)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제출한다.

1. 논문 투고 신청서
2. 연구 윤리 서약서
3. 저작권이양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
4. 논문 유사도검사 결과 자료
5. 심사료 10만원(계재확정 시, 게재료 별도)

**제7조 [원고형태]** 투고하는 논문은 워드프로세서(아래한글 3.0이상)에 의해 작성된 형식으로 제한한다. 단, 함께 제출되는 제6조의 서류는 자유형식으로 한다.

**제8조 [게재원칙]** 투고된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

1. 투고된 논문은 3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, 그 중 2명 이상 심사위원의 게재 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.
2.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재심하도록 한다.
3.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어 저자에게 수정요청 된 논문은 안내된 기한 내에 회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최종판정한다.
4. 저자가 제출한 저작권이양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.
5. 비심사논문(기고논문 등)을 게재할 경우는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한다. 단, 제6조 2~4호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.

**제9조 [투고제한]** 다음 각 호의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를 제한한다.

1. 다른 학술지(연구보고서, 대학논총 포함)에 이미 게재된 논문
2. 제6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논문

**제10조 [원고 제출]** 논문의 투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편집위원장이거나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.

1. 본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제출 게시판에 제출
2.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메일로 제출

### 제 3장. 논문심사 규정

**제11조 [심사의 기본방향]** 본 학회 제3조 (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)의 각 호에 따른 투고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.

1. 저자의 투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.
2.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 회원자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**제12조 [논문의 게재]** 연구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으며, 논문 이외의 게재물은 편집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사 여부와 방법을 정한다.

**제13조 [심사절차]**

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접수 즉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수시로 심사한다.

**제14조 [심사위원 위촉]**

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4조1 [심사위원 배정]**

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자를 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.

- 1. 배정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배제한다.
- 2. 한 편의 논문에 배정된 심사위원 3인 모두가 동일한 소속이면 아니 된다.

**제15조 [심사 및 평가]**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심사하여 별도의 심사의견서를 제출하며, 심사판정은 게재, 수정게재, 수정 후 재심, 게재불가로 구분한다. 이 때, 최종판정은 <표.1>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으로 결정되며, 다음 각 호의 최종판정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- 1. “게재” : 최종판정이 ‘게재’ 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게재한다. 이때, 저자가 심사평에 대한 사소한 보완이나 자구 수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.
- 2. “수정게재” : 최종판정이 ‘수정게재’ 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와 함께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게재한다, 이때, 저자는 논문수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에 대한 수정내용을 제출하고,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수정유무를 확인해야 한다.
- 3. “수정 후 재심” : 최종판정이 ‘수정 후 재심’ 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판정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, 재심사는 제15조1의 절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4. “게재불가” :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.

**<표.1> 심사위원 판정별 최종판정 기준**

심사위원 1	심사위원 2	심사위원 3	최종 판정
게 재	게 재	게 재	게재
게 재	게 재	수정 후 게재	
게 재	게 재	수정 후 재심	
게 재	게 재	게재불가	
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게재	수정 후 게재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게재	게재불가	
게재	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
게재	수정 후 게재	게재불가	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게재	수정 후 재심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게재	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
수정 후 재심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
게재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
수정 후 게재	수정 후 재심	게재불가	
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불가
게재불가	게재불가	수정 후 재심	
게재불가	게재불가	수정 후 게재	
게재불가	게재불가	게재	

**제15조1 [심사 및 평가(재심)]** 제15조의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다.

1. 해당 논문의 1심을 맡았던 원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맡아야 하며, 부득이하게 재심을 하지 못할 경우 원심사위원은 사유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편집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.
2. '게재', '게재불가'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재심하지 않으며, '수정게재' 또는 '수정 후 재심'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만 재심사하도록 한다.
2.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 '게재', '수정게재', '게재불가'로만 판정한다.
3. 그 외의 절차는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.

**제16조 [심사 기준]** 본 학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
2.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
3. 연구내용이나 방법의 독창성
4. 최근까지 연구 동향의 반영도
5.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
6. 그 외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.

**제17조 [심사의 비밀보장]**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, 심사의 내용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 [게재 순서]**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논문의 투고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,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9조 [이의제기]** 저자가 논문의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제심을 요청할 수 있다. 그러면 편집위원장은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 심사위원 외의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.

1. 제4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진행 시, 심사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.
2. 제4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‘게재’ 또는 ‘게재불가’ 로만 한다.
3. 재제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4. ‘게재’ 판정이 나더라도 편집위원장이 일정 상 불가피하다 판단하는 경우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.

**제20조 [심사위원 준수사항]**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저자와 심사위원 간 존재할 수 있는 입장 또는 견해의 차이는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.
2.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
3.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를 작성함에 저자에 대한 학문적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.

**제21조 [기타]**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.

## 제 4장. 부 칙

### 제1조 (시행일)

제 정: 2011년 11월 26일

일부개정: 2017년 05월 01일

2018년 10월 04일

2019년 01월 08일

2019년 08월 09일

2019년 12월 30일